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제10차 행정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재정국장 진정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정비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(교부) 제한 사유 정비(안 제23조제4항)
 - 보조금 신청제한 사유 중 “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” 규정 삭제
-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(안 제31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『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』에서 발굴·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은
 -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,
 - 안 제31조에서는 입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
 - 기타 조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.
- 검토결과, 본 조례 제23조 제4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, 교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의 위임이나 근거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해 보임.
 - 또한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제7항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1조는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 -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나 자구수정 등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정비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(교부) 제한 사유인 “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” 규정 삭제(안 제23조)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(안 제31조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 10. 18. ~ 11. 7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를 “(정의)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에 한정하여”를 “경우에만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위원회 설치)”를 “(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제6조제1항 중 “설치한다”를 “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매연도”를 “매 연도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제2호 중 “적정여부”를 “적정 여부”로 한다.

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 다)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"법"이 라 한다)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경우에 한</u> <u>정하여</u>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4조(보조대상 사업) ----- ----- ----- -- <u>경우에만</u> ----- ----- 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 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<u>설치한다</u> .	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과 같이 구성한다</u> 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	제1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
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 업에 대해서는 <u>매연도</u> 마다 해당연도 의 예산의 <u>범위내</u> 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<u>매 연도</u>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~ ⑥ (생 략)

제17조(교부결정)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.

1. (생 략)
2.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
3. 4. (생 략)

제23조(실적보고) ① ~ ③ (생 략)

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제31조(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
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교부결정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적정 여부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실적보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〈삭 제〉

〈삭 제〉